

해양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
번 호 3184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.

발의자 : 정인화 · 홍문표 · 진선미

주승용 · 황주홍 · 윤영일

최도자 · 이용주 · 김종회

송기석 · 이동섭 · 박준영

의 월(12월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별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8조 및 제39조).

해양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이 개정한다.

제38조 전단 중 “3천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39조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벌칙)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해양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생명자원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	제3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<u>5천만원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
제39조(벌칙) 제31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39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 -----.